

「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정성문)

가. 제안이유

- 보건의료원 기구개편 및 동계올림픽 대비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
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건의료원 조직개편
 - 조정사유 : 보건의료원 조직 이원화(보건사업과, 진료지원과)
 - 주요사항
 - 과 명칭 변경 : 진료부 ⇒ 진료지원과
 - 부서명칭 변경 : 보건사업과 방문보건담당 ⇒ 지역보건담당
 - 부서신설 : 보건사업과 감염병관리담

○ 세부내역

과 명	현 재	개 편	담당명
보건사업과	명칭 : 보건사업과 담당 : 4담당	명칭 : 보건사업과 담당 : 5담당	보건행정담당 지역보건담당(변경)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감염병관리담당(신설)
진 료 부	명칭 : 진료부 담당 : 2담당	명칭 : 진료지원과 담당 : 2담당	원무담당 진료담당

□ 진부면 맞춤형복지팀 신설

- 조정사유 :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북부권 맞춤형복지팀 신설
- 주요사항 : 진부면 5담당 ⇒ 6담당(맞춤형복지팀 추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원의 조직을 보건사업과와 진료지원과로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과·부장”을 “보건사업과장, 진료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